



: 2018-12-07

## 대 구 고 등 법 원

### 제 1 행 정 부

### 판 결

사 건 2018누371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REDACTED]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REDACTED] 시장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구합24549 판결  
변 론 종 결 2018. 9. 14.  
판 결 선 고 2018. 10.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710,714,010원  
의 부과처분 중 62,079,3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  
면, 위 재산세 부과처분일 '2017. 9. 13.'은 '2017. 9. 7.'의 오기로 보인다).



##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2017. 9. 13.'을 '2017. 9. 7.'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이는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5, 6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용달

              판사      김태현

              판사      광병수